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한장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영만 文敎社會委員會의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忠淸北道醫療保護審議委員會條例改正條例案

1. 提出者 : 충청북도지사

2. 提出日字 및 回附日字

가.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3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

3. 提案事由

의료보호법(법률 제4353호, '91. 3. 8) 및 의료보호법 시행령 (대통령 제13461, 91. 9. 6)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

4. 主要骨子

가. 위원회의 위원수를 "5명"에서 "7"명이내로 증원

나. 위원의 任期를 "2년"에서 "3년"으로 延長하고 연임이 가능토록 함

다. 위원장 이외에 부위원장직 新設

라. 시·군 심의위원회 신설에 따른 도 심의 위원회의 기능 조정

1) 의료보호기금의 管理, 運營에 관한 사항

2) 시·군의 의료보호 事業의 조정

-시, 군 심의위원회의 기능

- 시·군 심의위원회의 기능
- 입원기간의 연장 승인
- 타 지구에서의 진료승인
- 대불금의 결손 처분

5. 檢討意見

忠淸北道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條例 改正 條例案을 검토한바,

가. 의료보호법 (법률 제4353호, 91. 3. 8) 및 동법시행령 (대통령령 제 13461호, 91. 9. 6)의 改正으로 관련 條例를 개정함에 있어,

나. 도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기능 조정으로 시·군 의료보호 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효율적인 管理와 진료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등 業務를 능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條例를 改正하는 것으로 본 改正 條例案 타당하다고 사료함.

6. 改正條例案 : 별첨

7. 根據法令 : 별첨

8. 其他參考資料 : 별첨

다음은 지방공사 忠淸北道 청주의료원 및 지방공사 忠淸北道 충주의료원 설치條例中 改正 條例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地方公社忠淸北道淸州醫療院및地方公社忠淸北道忠州醫療院設置條例案中改正條例案

1. 제출자 : 충청북도 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1월 13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1월 13일